

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8.10.25.(목) 14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
허 욱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표철수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차기회의에서 접수하기로 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가.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8-58-477)

- 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’에 대해 전해선 인터넷윤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‘기술적 조치의무’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8개 사업자*들에 대한 현장점검(‘18. 7~8.) 실시결과,
* 불법음란물을 표본으로 송수신(업·다운로드) 차단을 점검한 결과, 자동 차단(필터링) 조치가 미작동(무력화) 하거나 불법음란물 유통량이 많은 사업자들을 선정

- ㈜위드디스크(1개사)가 ‘18년 5월 3일부터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를 해제하고 현재(‘18.10.18.)까지 적용하지 않는 등 기술적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, ㈜위드디스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,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,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사업의 등록취소를 요청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8-58-478~533)

- o ‘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’에 대해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신고·접수된 76개 유통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, 지원금 과다 지급, 특정요금제 등 사용의무 부과, 오인광고, 사전승낙서 미게시, 사실조사 거부·방해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 총 8,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7] 보고사항

가. 「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(이동통신분야)」에 관한 사항

- o ‘「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(이동통신분야)」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천지현 이용자 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신속한 통신서비스 분쟁해결 지원 및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동통신 분야의 ‘맞춤형 피해구제 기준’을 원안대로 접수함

※ 기준 주요내용

-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의 반품기준 수립,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·명의 도용 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 필수확인서류 명시, 행방불명자 해지 시 위약금·할인 반환금 면제 등

나.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o ‘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김재철 방송

광고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'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' 제16조(방송광고 수수료)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(방송광고수수료)에 따라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* 지급범위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

* 수탁수수료 :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액의 20% 범위내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(미디어렙)에게 지급하는 수수료

※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

- 지상파·지상파DMB·종합편성PP로 구분되었던 수탁수수료 범위를 일원화
- 지급범위는 최근 4년간 수탁수수료 실제 지급비율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14%에서 19%로 규정

<수탁수수료 지급범위 개정안>

구분	현행	개정안
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	13% ~ 16%	14% ~ 19%
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	13% ~ 18%	
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	15% ~ 19%	

다.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'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'에 대해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방송사-외주제작사 사이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저작권 보유 합의가 있을 경우, 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(편성시간의 100분의 130을 인정)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

8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10월 31일(수)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5:37)